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파 주 시 장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가. 기간: 2026. 9. 1.(화) ~ 2026. 11. 30.(월)

나. 지정장소 정기검사(읍면동 순회) 장소 및 일시

검사일시	시간	대상지역	검사장소	비고
2026. 9. 1.(화)	10:00 ~ 16:00	적성면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 9. 2.(수)	10:00 ~ 16:00	광탄면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2026. 9. 3.(목)	10:00 ~ 16:00	파평면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2026. 9. 4.(금)	10:00 ~ 16:00	월롱면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2026. 9. 7.(월)	10:00 ~ 16:00	탄현면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2026. 9. 8.(화)	10:00 ~ 16:00	법원읍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2026. 9. 9.(수)	10:00 ~ 16:00	문산읍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2026. 9. 10.(목)	10:00 ~ 16:00	파주읍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026. 9. 11.(금)	10:00 ~ 16:00	조리읍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2026. 9. 14.(월) ~ 2026. 9. 15.(화) (2일)	10:00 ~ 16:00	금촌 1, 2, 3동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2026. 9. 16.(수) ~ 2026. 9. 18.(금) (3일)	10:00 ~ 17:00	운정 1, 2, 3, 4, 5 ,6동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2026. 9. 21.(월)	10:00 ~ 16:00	교하동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기상 여건,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고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정기검사 일정과 상관 없이 타 읍면동 정기검사일에 검사 가능

다. 소재장소별 정기검사

: 소재장소별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 검사원이 계량기가 설치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실시

○ 신청조건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신청기간: 2026. 7. 20.(월) ~ 2026. 9. 1.(화)

○ 신청방법: 신청서(파주시청 누리집 다운로드) 제출

- 방문접수: 파주시청 민생경제과(파주시 시청로50, 차고동 2층)
- 전자접수: olga909@korea.kr

※ 소재장소별 정기검사 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 장소별 정기검사는 신청 접수 후 검사 일정을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나, 검사 여건에 따라 소재 장소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장소 정기검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저울 및 판저울, 전기식저울 저울 등)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정기검사 기간 외 계량기 검사

- 정기검사 대상자는 정기검사 기간 외에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거나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완료 후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방문 시, 해당 서류 확인 후 합격필증 교부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정기검사 문의처: 파주시청 민생경제과 (☎031-940-4535)

붙임 소재장소별 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